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숙명학원(숙명여자대학교)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숙명학원(숙명여자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 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0	0	0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-	해당	사항	없음
3. 학교 관련	0	0	0	
4. 부속병원 관련	-	해당	사항	없음
계	0	0	0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숙명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 2. 숙명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9년 4월 25일

학교법인 숙명학원
감 사 백창현 (인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074호)

감 사 장 석림 (인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918호)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9년 4월 25일

학교법인 숙명학원

이 사 장 이승환

(인) 이승환

피감사 기관장

2019년 4월 25일

숙명여자대학교

총 장 강정애

(인) 강정애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귀하

사립학교법 제19조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와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, 동일로 종료되는 2018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, 동 부속서류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설립한 숙명여자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교비회계대차대조표, 동일로 종료되는 2018회계연도의 교비회계자금계산서, 교비회계운영계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시사와 질문 등의 방식으로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 결과, 감사의 의견은 다음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한 재무제표와 이에 관련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숙명학원 및 숙명여자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2018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.

권고 사항

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보상제도의 새로운 도입/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.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보상제도의 도입은 발전기금의 적극적인 유치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보상제도가 학교의 보상제도와 다르게 운영이 될 경우,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 따라서, 타대학 운영 사례의 구체적 사례분석 포함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한 후 2019년도중에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25일

학교법인 숙명학원

감사 백승현

감사 장석평

피감사기관장(입회인)

이사장 이동환

총장 강재애